

#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 안내문

1.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, 기 발령한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관련 행정조치(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-1837호)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·시행함을 안내합니다.

가. (적용대상)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
나. (처분내용) 다음의 장소 및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

- 1)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
- 2) 운송수단(대중교통)
- 3)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
- 4) 실외에서도 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

다. (처분근거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의2~4호

라. (처분사유) 인천시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해 개인방역 강화 및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

마. (처분기간) 2021. 7. 6.(화) ~ 별도 해제 시까지

바. (위반시 과태료) 위반당사자(10만원) 및 관리·운영자 1차(150만원), 2차(300만원)

\* 부과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의2호, 제2의3호, 제2의4호 및 같은 법 제83조(과태료) 제2항, 제4항, 제5항

사. (과태료 부과권자) 시장, 군수·구청장

아. (단속내용)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

자. (단속방법)

-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
- 위반행위 적발 시,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, 불이행 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

차. (과태료 부과 예외대상)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

2.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3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※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- '고시공고' 또는 '새소식'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21. 7. 6.

인 천 광 역 시

